

2026년 효행장려금 지원계획

❖ 3대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과 건강한 가족공동체 형성에 기여

※ 지원근거 : 태안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1조, 12조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급 자격 기준일 : 2026. 10. 1.(매년 10월 1일)

- 1대 생년월일 : ~ 1956. 9. 30. 까지 지급가능
- 1대 생년월일 : 1956. 10. 1. ~ 이후 지원불가(2027년부터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가구별 연 1회 / 금300천원 지급 (10월 중)

— 예 산 액 : 금150,000천원(군비)

— 예산과목 : 가족정책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효행장려금 지급,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정수혜금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 지급

○ 연도별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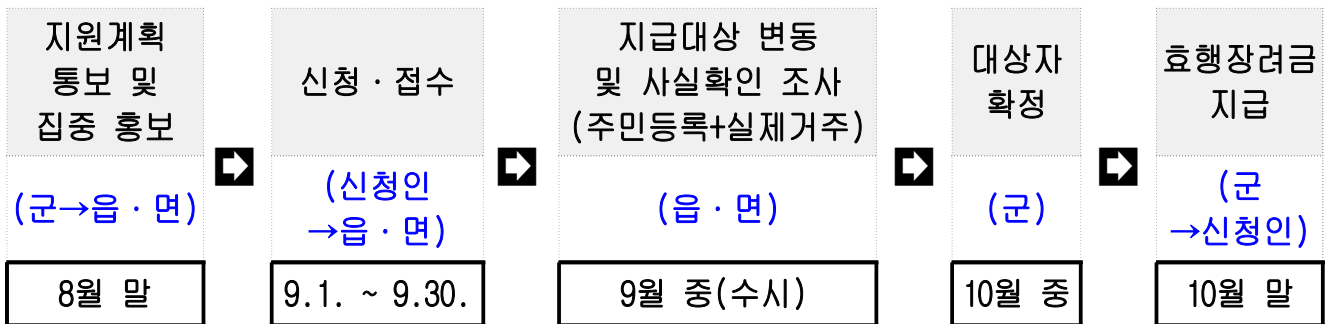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가구)

연도별	지급액	계	태안	안면	고남	남	근흥	소원	원북	이원
'18년	215,100	717	230	138	36	74	68	82	53	36
'19년	202,200	674	224	128	38	63	59	74	54	34
'20년	189,900	633	217	123	31	60	59	69	39	35
'21년	174,600	582	216	115	31	51	56	48	34	31
'22년	165,600	552	204	109	30	45	55	46	32	31
'23년	148,500	495	199	84	27	37	50	42	25	31
'24년	132,900	443	167	73	26	45	36	29	33	34
'25년	115,800	386	137	73	27	37	36	21	24	31

2 지원 대상자 조사 및 지급

추진사항	내 용
① 홍보	○ 이장회의, 태안소식지 등 집중 홍보
② 사실확인 조사	○ 2025년 지급 대상자 중 변동사항 확인 ○ 전입일자, 실제 3대 동거 여부 확인 등 ※ 조사 시 유의사항 - 가족수당, 건강보험료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지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③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대상자 확정 및 개별 계좌 입금

○ 지원절차



3 개선사항

- 해외 실거주자는 형식적 주민등록만으로 효행장려금이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태안군 내 실거주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지원기준 마련
- ※ 출입국 기록,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 등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

4 행정사항

- 신규대상자(연령 도래 등) 누락되지 않도록 민원팀 협조 후 적극 발굴
 - 효행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및 지원신청서 징구
- 가구 내 중복 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 등 확인 철저
- 지급대상자 명부 제출(붙임4) : 2026. 10. 1. 限
 - 누락자는 예산범위 내 추가 지급